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덩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요약〉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시행 목적

-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 미 통보 및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의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

○ 시행 예정일

- 2008. 1. 1일

○ 통보대상 하도급공사 범위

- 2008. 1. 1일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 공사 단,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 이더라도 원도급 공사가 1억미만 공사인 경우 제외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통보한 내용 변경 및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인터넷으로 통보

I.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1.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개요

○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相生)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도급계약 일방적 해지, 공사대금 체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모니터링
-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상시감시
- 공사시공과정의 투명화 및 공사품질제고 도모
- 원·하도급업체의 참여업체/참여자 실명관리
- 불공정거래로 발생하는 하도급자 권익보호 및 원·하도급자간 공동협력체로 발전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원도급자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하도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하도급계약사항 및

공사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기 구축된 건설공사정보시스템(건설산업DB)과 연동하여 건설공사의 원도급-하도급 과정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구축 되었다.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비치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이라고 한다.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및 방법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통보시행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보하는주체	• 1차 하도급업체(자사의 하도급 계약사항을 입력 및 통보)
통보대상공사	•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이『4천만원 (vat포함) 이상인 공사』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Url : http://www.kiscon.net)
통보내용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 하도급계약사항 및 공사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과태료
<p>•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p> <p>※ 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기재나 미통보를 가용한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과태료를 부과</p>

5.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p>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개정예정 2007.11>

-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예정 2007.9>
-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예정 2007.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하도급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신설예정 2007.11>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 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 ③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③의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II.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1. 개요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되었고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이고 시스템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2. 이용방법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의「하도급공사대장관리」를 통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용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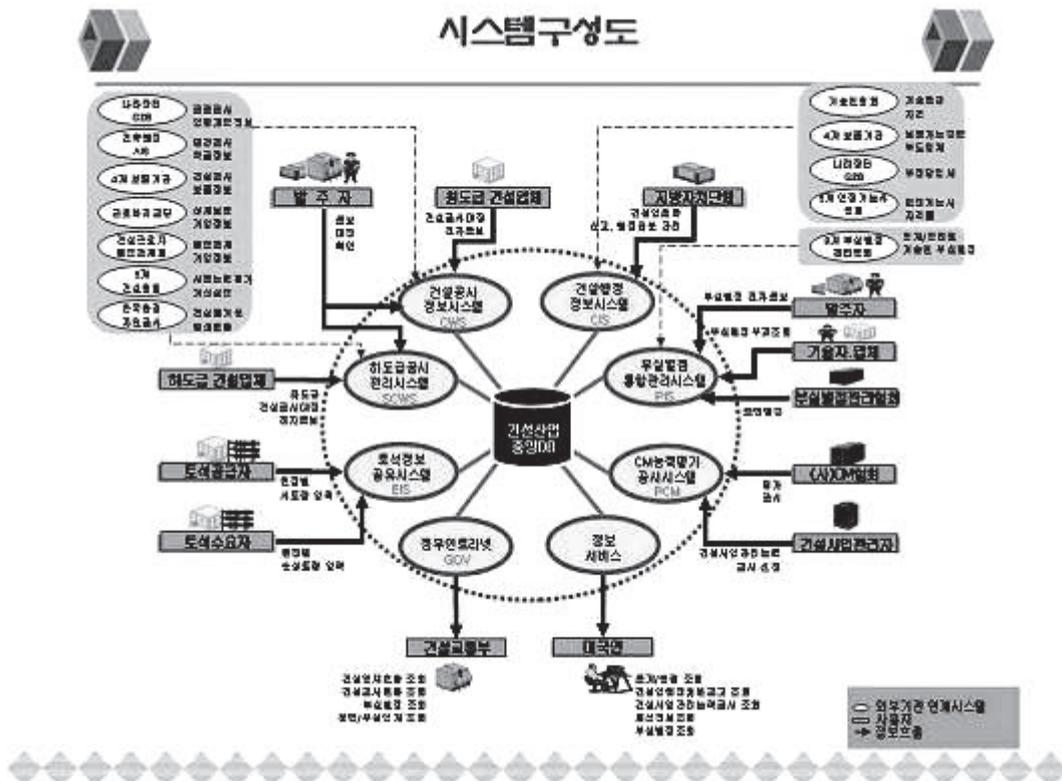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WEB 기반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url :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or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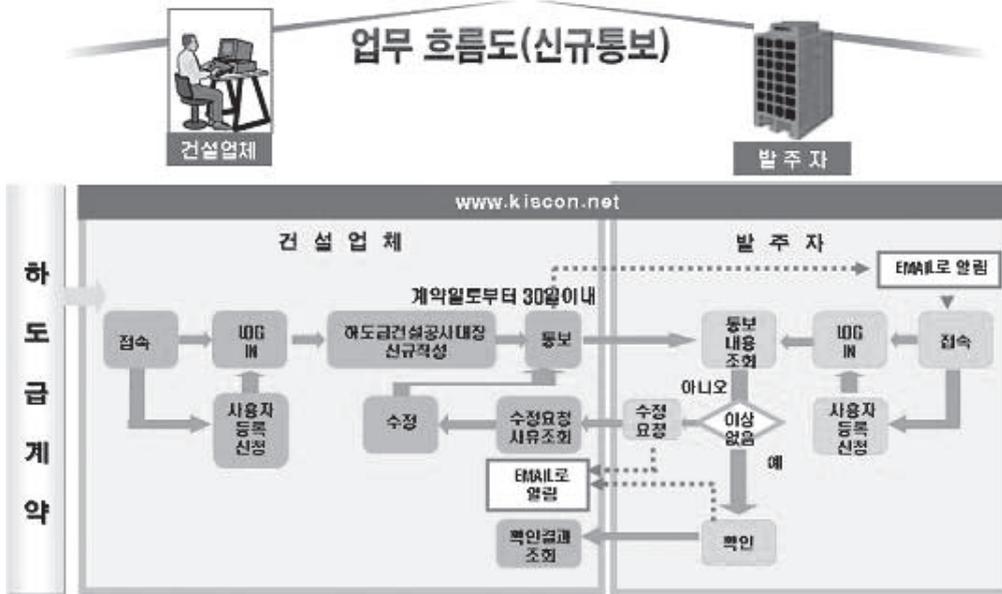


4.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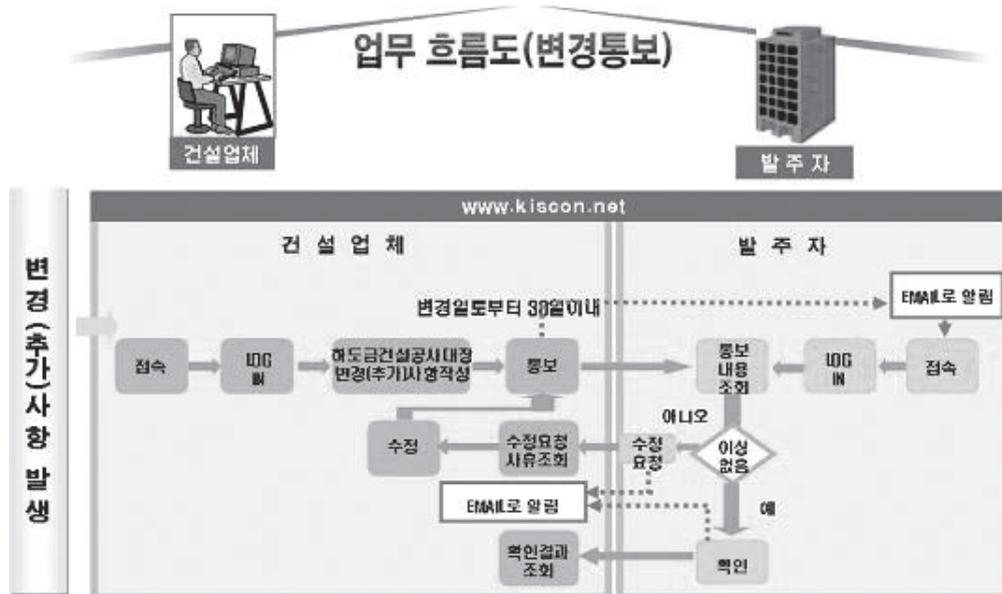
사용자	업무내용
건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공사대장등록 및 변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 -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통보 • 자사공사검색 및 현황조회 • 하도급부조리 발주자 직접신고 • 하도급대장접수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완료 처리 - 통보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 처리
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발주공사 현황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종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하도급현황 조회 • 발주자 정보관리

5. 업무 흐름도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사항 통보



Ⅲ.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의견 수렴기간 운영

□ 하도급건설공사대장통보 의견수렴기간 운영

○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하도급과정·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앞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기간을 운영한다.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건설업체 입장에서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제안하면 시스템에 반영 가능하다.

□ 의견수렴 운영기간

○ 2007년 9월 12일 ~ 2007년 12월 20일

○ 의견수렴 운영기간동안 등록된 건설업체의 정보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시스템의 DB에서 삭제된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입력 및 통보가 잘못되어도 무방하니 많은 참여와 의견 바란다.

○ 발주자도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사용자등록(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견수렴 운영기간동안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은 테스트 자료이므로 참고만 하고, 발주자에게 제공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용한 후 개선사항 및 의견을 개시 바란다.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의견수렴기간동안 등록한 정보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또한, 건설업체(발주자)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한다(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기존 ID 및 비밀번호 사용).

□ 사용자지원 및 의견서 제출처

○ TEL : 031-380-0394, 0448

/ FAX : 031-380-0358

○ Email : hglee@krihs.re.kr



건강
상식

술을 끊으면 줄어든 뇌가 회복된다?

캘리포니아 대학(UCSD)의 브라운(Sandra Brown)박사가 폭음 청소년들의 두뇌를 촬영해 분석해본 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 폭음하는 청소년들은 비록 3주 동안 완전히 금주를 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기억력이 되돌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태

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 두뇌가 알코올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폭음을 피해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 시스템 접속방법

○ www.kiscon.net 접속 후 “하도급 공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방법은 ‘매뉴얼’ 참고

○ 건설업체로 사용자등록 후 사용(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



**토막
상식**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 그로기

‘그로기(groggy)’라는 말은 18세기 중엽 전쟁터에서 시작 되었다. 서인도 제도의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버논 제독은 그의 수병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는 늘 조악한 견모 훈방 지인 그로그랭(grosgrain) 외투를 애용했는데, 수병들은 그런 그를 ‘올드 그로그(Old Grog)’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비웃었다.

그런데 당시 수병들에게는 럼주라는 독한 술이 지급됐는데

수병들이 이를 과음해 주정하는 일이 잦았다. 제독은 럼주에 물을 섞어 지급하도록 했다. 안 그래도 제독을 싫어하던 수병들은 불만이 많았고, ‘물 탄 럼주’를 ‘그로그’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니까 ‘그로그’는 값싼 외투와 물 탄 럼주, 그리고 인기없는 상사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